



외 국 의

가금 위생계획 소개 (2)

박 근 식

〈안양가축 위생 연구소〉

1. 미국의 가금위생계획(2)

10. 용어 및 격부치기

계군 및 생산물 본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계군 및 그의 알과 병아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용어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a) 고등종계(CIS Record of performance)

본장 제16항에 규정된 개체 또는 가계의 능력 기준을 갖춘 자계군(雌鷄群) 또는 제17항의 능력 기준을 갖춘 웅계군(雄鷄群)

(b) 능력 검사제 종계(能力検査済種鶏) :

(U.S Performance Tested Parent Stock)

본장 제23항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계군 이러한 격부치기나 자격을 갖는 종계장이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그의 종계가 지정한 증식장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 적용된다.

(c) 난용 층명종계(U.S Certified for eggs)

(1) 모든 검정 종웅계의 또는 (2) 난용검정 제종계의 자격을 획득했을 때와 같은 조항으로 교배한 난용 검정 제종계의 생산에 쓰여지는 것.

(d) 육용 층명계(U.S. certified meat)

육용검정 제종계의 자격을 획득했을 경우와 같은 조합으로 교배한 육용검정 제종계의 자 및 웅

(e) 초등종계(U.S approved)

주정부기관 또는 주립농업대학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공인검사원이 선정한 종계군의 자와 웅

(f) 추백리—가금티프스 청쟁종계

다음 요건의 하나에 적합한 계군

(1) 본장에 제5항의 (C)의 (1)에 규정된 최초의 공격 혈액검사로서 추백리—가금티부스 양성계가 적발되지 않았던 계군 다만 최초의 검사에

서 1수 이상의 양성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계군은 그후 연속 2회의 공격 검사에서 음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본장의 제5항 (C)의 (2) 및 (3)에 기재한 상항 하에서 사양한 계군.

(g) 마이코프라즈마 가리셨티콤(하라 MG 약함) 청쟁종계

(1) (g)의 (2)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5개월령시에 모든 닭에 대하여 MG 혈액검사를 실시한 계군으로서 MG 양성계가 없고 제3장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사양한 계군 이에 본격부치기를 유지하기에는 계군의 10%의 무작위 축출 또는 주정부기관이 지시한 수수에 대하여 60일마다 혈액 검사에서 MG 무감염 계군이란 것이 증명 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MG의 공식 혈액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i) 혈액의 채취는 공인 검사원 또는 주(州) 검사관이 행한다. 공인된 연구소에 있어서 혈청 평판응집 반응, 시험판 응집 반응, 턱혈구응집 억제 반응(HI), 또는 이들의 2~3가지 조합한 검사의 어떠한 것이던 행한다. HI 검사는 그의 혈청학적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검사를 농림성이 인가한 MG 항원을 사용하여 제조소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주정부기관이 정한 방법으로서 양성반응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의 계군이 MG 음성(陰性) 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기낭의 손상유무

(ii) MG 균의 발견

(iii) 보조적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시 이들의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에는 해당 계군은 MG 음성으로 간주한다. MG 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계군은 감염계군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검사 (B)의 (i) 또는 (iii)로서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계군을 의사(疑似) 계군으로하여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실험실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1. 감 독

(a) 주정부기판은 본장의 제 5, 10 및 14항에서 규정된 축출, 채혈, 혈청검사를 실시할 공인검사원을 임명한다.

(b) 주정부기판은 가입계군의 축출 및 검사의 감독 및 본계획의 필요조건의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적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검사관을 고용하거나 임명한다.

12. 검 사

(a) 각가입부화장은 해당부화장의 사업이 본계획의 필요조건을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한 회수의 검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b) 주검사관은 매년공인 검사원이 축출 또는 검사한 계군의 샘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계군의 검사는 충분한 수수의 자웅에 실시한다. 전혈검사(全血検査)에 의해서 가입자격을 얻고 있는 계군에서는 공인 검사원이 충분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계군이 가입자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수수에 대해서 검사한다.

13. 가입취소

본계획의 규정 또는 본장의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주정부기판의 규칙에 위반하여 주정부가 정한 기간내에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정부기판은 각 케이스에 대해서 일정한기간 가입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정부는 충분한 조사를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 혈액검사

(a) 공식혈액검사는 공인검사원 또는 주검사관이 표준시험관 응집반응, 즉 급속혈청반응, 때

로는 또 착색항원에 의한 전혈반응, 즉 급속전혈 응집반응에 의해서 실시한다. 전혈반응에 사용되는 항원의 각 룻트는 농무성의 검정의 필한 다가형(多價型)의 것이라야 한다.

(b) 추백리—가금티푸스 항원에 의한 검사에서는 전회(前回)의 검사와 공식혈액검사와의 간격을 적어도 21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c) 종계로서 사용될 때는 5개월령에 검사해야 한다.

(d) 가입자의 농장에서 기르는 모든 가금은 수금(禽)을 제외하고는 가입계군과 동일한 기준의 검사에 합격하거나 또는 이들 가금이나 이들의 알을 가입계군과 같이 이들의 알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e) 본계획에 가입 또는 가입후 본계획의 살모네라 항원검사의 성적은 검사종료후 10일 이내에 주정부기판에 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양성계는 해당 계군의 격부치기를 결정할 경우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f) 양성계는 해부 및 세균학적검사를 위해서 연구소에 송부한다. 연구소 및 검사수수는 주정부기판이 지시한다. 세균학적 검사의 최저의 출기(術技) 기준은 별도규정을 의한다. 양성계가 검사종료후 10일 이내에 송부되어 세균학적검사에서 추백리 또는 가금티푸스 감염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계군은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 음성으로 본다. 다만 살모네라균 또 파라코라본의 다른형의균이 분리된 경우에는 주정부기판은 해당계군의 가입자격을 취소하거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를 행한다.

(g) 병아리에 추백리 또는 가금티푸스의 발생이 인정된 경우에는 주정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 병아리를 생산하였던 계군의 재검사를 명할 수가 있다. 이 검사에서 추백리 또는 가금티푸스가 적발된 경우에는 바로 해당계군의 격부치기를 취소한다. 이 장의 제10항의 (f)에 규정한 필요조건에 적합할때까지 재검사를 행한다. 한편 주정부기판은 해당 계군이 생산한 종란을 부란기에서 끄집어내어 부화전에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살모넬라 또는 아리조나균이 가입부화장 생산의 샘플로부터 분리될 경우에는 주정부 기판은

감염원을 추궁하여 박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조사결과는 축산조사부에 보고 해야 한다.

(h) 검사가 반응을 막거나 살모넬라균의 세균학적 검색을 방해하는 과학적 근거를 갖는 약제는 살모넬라에 의한 격부치기를 목적으로 한 검사 또는 세균학적 검사의 실시전 3주간은 닭에 투약해서는 안된다.

15. ROP 개요

ROP의 격부치기는 주정부기관의 감독하에 도합 네스트조사 또는 혈통번식을 행한 닭에 대해서 행하여진다.

16. ROP : 암컷(우)의 자격

암탉의 경우 적어도 6개월간 도합 네스트조사를 하여 산란율과 난중의 기록이 종계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ROP 암컷으로서 가격이 주어진다.

17. ROP : 숫컷의 자격

숫컷의 경우 ROP 암탉에서 생산된 숫컷과 ROP 암컷과의 단웅교배(單雄交配)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혈통서가 종계가에 보지 되어 있는 것에 ROP 숫컷으로서 가격이 주어진다.

18. ROP : 생산물의 판매

생산물을 ROP란 격을 부쳐서 판매할 경우 종계가와 해당 생산물이 가격이 있는 ROP 숫컷과 ROP 암컷의 단웅교배(單雄交配)에서 생산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19. 생 략

20. ROP : 감독관의 의무

ROP 감독관은 ROP가입의 감독상황에 대해서 주정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21. 생 략

22. 능력검정제 종계(Parent stock) : 개요

a) 능력검정제의 종계 격부치기도 랜덤샘플 검정에 출품된 계군의 성적에 의해서 행하여 진다.

이 성적은 축산조사부에서 발표되는 종합보고서에 기재된 것에 의한다.

b) 격부치기 신청은 종계의 종계가가 주정부기관에 대해서 행한다. 신청을 받은 주정부기관은 적격으로 인정하였을 때 당해 신청서를 축산조사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3. 능력검정제 종계 : 자격

a) 이 장의 제22항에 격부신청(格付申請)을 하는 계군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1) 산란능력 검정제 일때는 공포된 종합보고서에 있어 당해종계군의 계사마저 수당의 사료비와 병아리대가 평균을 상회한 수익의 회귀평균이 전체의 검정시의 모든출품제의 평균을 상회하거나 또는 회귀평균이 최고인 종계군에 의하여 5% 수준의 위험율로 유의차가 없을것.

b) 능력검정제의 격부치기는 종합보고서에 공포된 성적에 기준해서 축산조사부가 한다. 축산조사부는 격부치기의 가부를 신청자 또는 주정부에 통지한다.

c) 능력검정제 격부치기의 유효기간은 1개년으로 한다.

단 공인종계가의 감독하에서 같은 조합으로 교배할 때는 1년 연장되며 당해 계군의 성적은 계속하여 종합보고서에 기재된다.

일반으로 시판되고 있는 다른 계통 또는 상품명의 계군의 후대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검정제일때는 각각의 계군은 능력검정제 종계자격을 부칠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언젠가 일반의 계군의 격부치기가 선전 또는 증명서에 관계할때만이 한정되어 있다.

24. 능력검정제 종계 생산물의 판매

생산물을 능력검정제 종계로 하여 판매 또는 판매하고자 할때, 종계가는 당해 생산물이 이격부치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정부기관의 등록부에 의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25. 랜덤 샘플검정(Random Sample Test) : 개요

(a) 이 검정은 2개 이상의 종계가의 계군을 대

표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여 각지에 있는 검정장에서 수용방식, 급이, 관리를 동일하게 하여 특정의 능력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다.

(b) 검정은 공평한 공적기관에서 행한다.

(c) 샘플은 다음방법에 따라 주정부기관의 감독하에서 축출한다.

(1) 검정하는 동급의 알을 축출하는 주내의 계군의 수 및 장소는 주정부 기관의 기록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군의 샘플은 명칭, 또는 번호를 부착한 계군에서 랜덤으로 행한다. 더욱이 샘플링하는 계군의 마리수는 1,000수 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2) 종란은 축출된 계군의 마리수에 비례하여 베스트 종계장의 저란실 또는 부화장의 종란케이스, 난좌에서 샘플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샘플링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종란부적격란은 제외한다.

(4) 샘플은 적당한 용기에 넣어 특수한 실 또는 실크포를 축출자가 봉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샘플링을 하는자는 각 샘플에 대해서 축출방법의 상세한 보고를 주정부기관 또는 검정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출품계군은 2개 이상의 구룹으로 나누어 구룹마다 능력을 기록한다.

(e) 계방의 할당에는 계방의 위치에 따라 다른 성적의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랜덤으로 행한다.

26. 랜덤샘플산란검정

(a) 각출품계의 개시마리수는 축출란에서 생산된 병아리 최저 50마리로 한다.

(b) 기록은 각 출품계의 능력에 따라 500일까지 한다.

(c) 검정종료후 감독관은 11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각출품계군의 성적을 종합하여 분석 또는 공표하기 위해서 축산조사부에 제출한다.

(1) 출품자의 주소, 성명, 샘플한 장소

(2) 출품계의 품종, 또는 교집방법(출품계가순계, 계통간교집(Line cross) 동풀종간교집(stram cross) 이풀종간교집, 균교계간교집, 이풀종간근교계간교집, 또는 합성종의 어느 것인가를 나

타냄).

(3) 계통 또는 상품명

(4) 150일령 또는 산란계사 수용까지의 사망율

(5) 150일령 또는 산란계사 수용시부터 500일령까지의 산란기간동안의 사망율

(6) 당해지점까지 생존된 검정계군의 마리수를 기초로하여 50% 산란이 2일 계속한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50% 산란도달 일령

(7) 산란계사 수용시 마리수에 대한 약초 1수당의 500일령 까지의 산란수

(8) 50% 산란도달 일령에서 500일령까지의 헌데이 산란율

(9) 산란계사 수용시 마리수에 대한 약초 1수당 사료비 및 병아리값을 뺀 이익(사고사, 감별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10) 알 1파운드 생산에 요하는 사료의 양(생산란중은 검정기간중 2주마다 평량(총란중)한 난중과 산란수로 계산한다)

(11) 적어도 2주마다 또는 동일 간격으로 1개월에 2회 평량한 난중에서 계산한 난중 평균 난중

(12) 검정계군에서 매주 1회조사한 대란 및 특대란의 비율.

(13) 150일령 또는 산란계사 수용시 및 종료시 체중

(14) 같은 방법으로 4반기마다 1일 또는 3개월마다 1일로 활란하여 조사한 하-닛트

(15) 4반기마다 적어도 3일간의 활란조사에 의한 1/8인치(약 3mm) 이상의 혈반란의 비율

(16) 4반기마다 적어도 3일간의 활란조사에 의한 8/8인치 이상의 유색 육반란의 비율

(17) 4반기마다 적어도 3일간의 활란조사에 의한 1/8인치 이하의 유색, 육반란의 비율

(18) 4반기마다 1일의 산란에 대한 측정한 비중

27. 랜덤샘플 산육검정

(a) 육성기 검정

(1) 검정계는 본장의 25항에 규정한 종란 또는 산란기 검정의 계군에서 채란하여 부화한 병아리 200수 이상

(2) 기록은 정해진 검정기간중 각 검정계마다 능력에 대해서 행한다.

(3) 검정종료후 감독관은 2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에 대해서 각 출품제군의 성적을 종합하여 분석 및 공표하기 위해서 축산조사부에 제출한다.

(i) 출품자의 주소, 성명, 샘플을 축출한 장소
(ii) 출품제의 품종, 계통 또는 상품명(교잡제 일때는 종계 및 암컷으로 구분)

(iii) 검정개시에서 종료까지의 병아리의 생존율

(iv) 검정종료시의 모든(암컷)의 생체중
(v) 검정종료시의 모든(수컷)의 생체중
(vi) 검정종료시의 전체 또는 랜덤으로 자웅각 50수를 적출하여 성별 또는 전체의 생체중에 대한 장을 제외한 중량 비율

(vii) 7. CFR. Part 70. Subpart B에 표시된 미국가금육규격(처리방법, 벌포의 결점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기준에 준한 성별의 동급분포 비율

(viii) 검정종료시까지 생체중 1파운드당 사용된 사료의 량을 나타낸 사료요구율

(b) 산란기 검정

(1) 출품제는 가입계군에서 축출한 최저 50수의 암탉으로 한다. 출품제는 이장의 제25항에서 표시한 방법으로 적출된 종란에서 생산될 것으로 한다.

(2) 기록은 각 출품제마다 능력에 대해서 150일간의 육성기관과 240일간의 산란 기간에 대해서 기록한다.

(3) 검정종료후 감독관은 1월 1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해서 각 출품제군의 성적을 종합하여 분석 및 공표하기 위해서 축산조사부에 제출한다.

(i) 출품자의 주소, 성명, 출품제를 적출한 장소

(ii) 출품제의 품종, 계통 또는 상품명, 출품제가 암탉제와 수탉제가 다를 때는 각자 그 명칭

(iii) 150일령 또는 산란제사 수용시까지의 사망율

(iv) 150일령 또는 산란제사 수용시부터 240일간의 사망율

(v) 250일간의 개시 암탉마리수당의 산란수

(vi) 50% 산란에 도달한 날부터 240일간의 헌데이 산란율

(vii) 매월 적어도 1일 측정한 종란중에서 계산한 평균란중

다목적 옥도 주제

살균 세척 탈취 소독제

요도솔-에스

IODOSOL-S

(보사부허가 193-33호)

- 타소독제보다 4~6배나 강력한 살균력과 침투력이 우수한 소독약
- 60초 이내의 빠른 살균력이 있는 소독약
- 모든균,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광범위한 효력과 선택형의 소독약
- 음료수소독 가능할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소독약
- 100~2000배까지의 희석가능한 경제적인 소독약
-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력이 강한 소독약
- 외화를 절약한 최초의 소독약

(포장단위 : 450, 1L, 182)

판매처 : 전국약품취급처

11종류 소독약을 제조하는 소독제의 전문매이카



제조 벌매원

한일양행의약(주)

서울·성동구상수동 101-1

고래표 53-7333 / 7334 (야간) 38-1020

(설명서 청구 및 지방주문과 대리점 문의는

서울광화문우체국시서함 299호로)